「인천혁신모펀드 제6호」 3차 출자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혁신모펀드 제6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조합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천혁신모펀드 제6호」 3차 출자사업(지역 투자조합)을 공고합니다.

2026. 11. 17.(화)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출자규모 및 기본 조건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 총 3억원 내외		
지원자격	○ **지역 공공 기반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조합의 출자·결성·운용**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관(회사) ○ **인천 본사 소재 투자기관(회사)로** 관계 법령 및 기관의 설립목적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출자분야	○ 인천시 전략산업 분야(ABC+E 등) -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기술융합,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출자조건	○ 인천광역시 내 본점을 둔 중소·벤처기업 투자 - 투자 시점에 인천광역시 내 본점을 둔 중소·벤처기업 - 투자 후 1년 이내 인천광역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기업 포함 - 의무투자금액의 10% 공동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가능하며, 세부 투자조건 및 의무투자 인정 기준은 별도 협의		
	대상 조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선정방법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서면검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적격성 검토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조합 결성계획, 운용사 역량, 투자계획 및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평가		
공고기간	○ 2026. 11. 17.(화) ~ 11. 23.(월) 15:00까지 (한국시간 기준, GMT+09: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1층 107호		

2. 공모내용 및 출자계획

○ 공모내용

- 인천 전략산업(ABC+E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투자조합을 조성하거나 기존 투자조합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정
- 신청기관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투자조합의 조성목적, 투자분야, 결성규모, 출자자 구성, 운용구조, 인천기업 투자계획 및 지역 투자생태계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투자조합의 주목적 투자분야는 인천시 전략산업 및 지역 혁신성장 분야를 원칙으로 함

○ 출자계획

분 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조합당 출자금액 (변동가능)	신청가능조합형태
전략산업분야 (ABC+E 등)	3억원	~ 최대 3억원	· 벤처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합 계	**3억원**		

3. 투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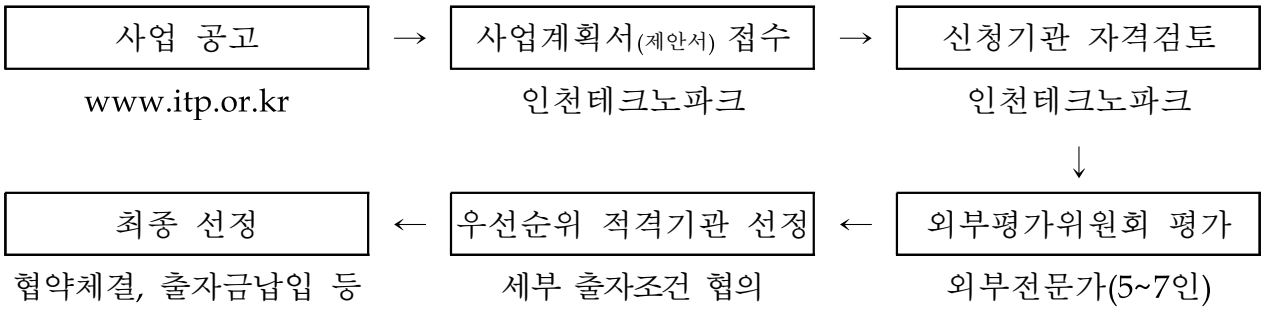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투자대상	**전략산업 분야 (ABC+E 등)**	○ 전략산업 : 인천시 전략산업 분야(ABC+E 등) - 해당 전략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기술융합,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 의무투자 : 인천 본사 소재* 각 출자분야 관련 산업분야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인천TP 출자금의 1배수 이상 의무 투자 * 인천 본사 소재 : 본사 인천기업 또는 투자 후 1년 이내 인천으로 본사 이전 기업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원칙으로 함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내외 ※ 변경될 수 있음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내외 ※ 변경될 수 있음
관리보수	○ 관계 법령, 주요 출자기관의 기준 및 조합규약 등에 따라 정함
성과보수	○ 관계 법령, 주요 출자기관의 기준 및 조합규약 등에 따라 정함
손 실 분담구조	○ 관계 법령, 주요 출자기관의 기준 및 조합규약 등에 따라 정함
투자방법	○ 관계 법령, 조합규약 및 출자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신주·구주, 보통주·우선주 등),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가능
출 자 금 납입방식	○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 후 상호 협의를 통해 납입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선납, 분할납 등 구체적인 납입방식은 조합 결성 일정 및 사업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조 합 결성시한	○ 결성시한 : 선정 후 최대한 조속히 결성(단, 2026년 이내 결성) - 조기결성이 가능한 조합을 우선 선발하며, 결성시한 연장 등 별도 협의
조합 운용현황관리	○ 조합 운용현황 및 투자실적 분기별 제출 ○ 인천기업 투자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운용사 소재지	○ 조합 운용사 소재지: 인천광역시 내 본점 - 공동운용(Co-GP)의 경우, 각 공동운용사의 본점이 모두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함.
기 타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재)인천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결정

5.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 선정절차



○ 제안서 발표평가 주요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 필요성 및 정책부합성	제안기관의 사업추진 필요성, 인천시 전략산업 및 지역 투자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성 및 레버리지 효과	TP 지원재원 대비 민간·외부 출자금 유치 규모, 조합 결성 가능성,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지역투자 효과	인천기업 투자규모, 의무투자 배수, 지역기업 발굴 및 후속투자 연계계획
조합 구성 및 운용역량	GP 구성, 운용인력 및 투자·회수 실적, 조합 운용체계의 적정성
사업실행 가능성	조합 결성일정, 출자확약 수준, 투자 파이프라인,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연계협력	인천TP 및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 기업육성·IR·후속투자 등 지역 생태계 연계방안

○ 우대사항

구 분	배점	주요내용
인천 기업 투자 포트폴리오 보유	2점	○ 인천기업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투자/회수) 보유(2점)
		○ 인천기업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투자경험) 보유(1점)

○ 평가 절차

- 사업계획서(제안서) 발표평가를 통한 평가점수 산정

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평가의견을 작성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우선순위 적격기관 선정

1)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적격기관 선정

2)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도 동일한 평가절차를 거쳐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 협의 결렬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기관과 협의 가능

3) 선정 이후 조합구조, 출자금액 및 세부 출자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6. 선정 취소

○ 신청자격 또는 본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안서, 발표내용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 중대한 오류 또는 사실의 은폐가 확인된 경우

○ 선정 이후 제안내용 또는 사업수행 여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된 주요 출자조건 또는 사업수행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협약·계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선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사항

○ 신청기관은 본 사업의 목적과 지원조건을 고려하여 투자조합의 조성·출자·운용 등 사업수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따라 신규 투자조합 결성, 기존 조합 추가출자(Multi-Closing), 출자지분 양수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신청 현황, 평가결과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수 기관을 선정하거나 기관별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조건에 적합한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내·외부 여건, 예산 및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세부 사업내용, 출자방식, 출자금액, 조합구조 및 주요 조건 등은 제안내용을 기초로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함

○ 선정기관은 확정된 사업계획, 협약·계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된 투자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안 당시와 비교하여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인천테크노파크와 선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함

8. 문의처

○ 벤처투자지원센터 032-858-6572, 6576, kimbj@itp.or.kr, jongmok@itp.or.kr